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462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462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가소10020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박범진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8. 21.

판결선고 2024. 9.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가소10020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6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6.부터 2024. 9.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6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운전자를 포함하여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21. 10. 31. 15:12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회기역 사거리에서 D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사고경위에 관하여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2021. 11. 1.부터 2021. 11. 14.까지 E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2022. 1. 7. F병원에 263,900원, 2022. 3. 2. E한의원에 2,402,090원
합계 2,665,99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

마-1. 원고는 2022. 1.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51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가단1777(반소)
손해배상(자), 이하 위 재판을 ‘선행 재판’이라 한다].

마-2. 선행 재판 중 2022. 8. 25. ‘원고는 피고에게 2022. 9. 20.까지 2,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결정의 청구원인란에는 ‘원고가 E의원, F병원에
지불보증하여 추후 치료비 청구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시행하여 치료비용(2,665,990원) 전액을 원고가
부담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3. 결국 2022. 10. 5.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낮은 속도로 서서히 직진하여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 차량을 지나가다가 원고 차량 우측 뒷부분이 피고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과 스치면서 정지한 사고인데, 충격 속도, 충격 면, 충격 각도 등 이 사건 사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흔들림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신체에 전달된 충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1. 11. 1.부터
E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주로 피고가 호소하는 자각적 증상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X-ray나
CT와 같은 객관적 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 조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 여부에 관한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 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 상해가능성 낮음으로 회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없어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2가단51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가단1777(반소) 손해배상(자),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선행 판결은 항소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를 받은 것이고, 원고는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으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에 따라 피고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각 지불보증을 하였고, 그 지불보증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한 점, 선행 판결에서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었는데,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치료비 지급을 할 원인이 없음에도 각 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본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공제금 2,665,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에 대한 입원 및 치료에 따른 진료 및 약물치료, 경과 관찰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모두 피고를 진료한 병원에 직접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에게 금전적 이익이 돌아간 것은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원고는 E한의원 등의 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심사청구도 하지 않아, 이 사건 치료비 지급은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는 자신의 채무인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치료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지불보증을 통하여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고, 지불보증을 철회 내지 취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특히 원고는 선행 재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의 범위를 ‘이 사건에서 반환을 구하는 범위를 제외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국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비채변제에 해당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는 최소한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전제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치료비 상당액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 원고의 위 취지를 믿은 나머지 선행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주었고,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믿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가)주장에 대한 판단

선형 판결에서 피고의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 즉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1),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봐도 피고의 위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공제금 지급으로 피고가 해당 병원에 대한 치료비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치료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나)주장에 대한 판단

자배법 제21조 제2항은 심의회의 심사결정은 그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심사청구의 당사자인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관한 규정일 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따라서 설령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심사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들 사이에 심사결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간주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뿐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피고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위 규정을 들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다), 라)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채무의 부존재를 알면서도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비채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선행 재판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범위를 국한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최소한 이 사건 치료비를 부담한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공제금 2,665,99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²⁾인 2023.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9.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형권, 판사 황순교, 판사 변성환

별지

- 1) 선행 판결에서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치료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 2)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